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 기준 적용 중지¹

관련 규정 : Circular 20/2014 및 Decision 2279/QD-BKHCN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4년 7월 15일자로 Circular 20을 공표하고 2014년 9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중고기계 자산, 설비, 공정라인의 수입조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Circular 20에 의하면,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산일 것.

둘째, 기계나 설비는 최초 품질의 80%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

둘째 조건에서 품질은 정성적인 요소로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모호하므로, 이 조건은 대체로 내용연수가 80% 이상 남아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중고 공정라인 전체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베트남 유관기관에 제출한 수입신청서류에 중고 공정라인의 사용목적과 목록이 구체적으로 구분 표시될 것.

둘째, 유관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셋째, 중고 공정라인의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에 공정라인의 가동상태가 사전 점검될 것.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일 표시 확인서류

¹ 이번 베트남 최신 해외정보는 조성룡 회계컨설팅법인의 조성룡 대표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② 베트남이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적격한 해외인증기관의 수입자산의 점검 인증서
- ③ 공정라인의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 feasibility study 및 유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서

Circular 20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중고자산을 수입(구입, 현물출자, 임차 포함)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반발이 제기되었고, 추가 투자 감소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8월 29일자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의 시행 정지를 공표하였습니다.

Circular 20을 제정하기 전 2013년 8월에는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총리령(Directive No. 17/CT-TTg)이 공표되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중고기계의 수입기준을 정하기 위해 Circular 20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ircular 20의 효력이 중단됨으로써,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기준이 다시 불명확해진 상황이며, 추후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